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2026. 1. 1.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 범위)	3
제2장 보안기능 시험 체계	4
제1절 일반사항	4
제4조(정책기관)	4
제5조(검증기관)	4
제6조(시험기관)	5
제7조(신청기관)	5
제8조(보유기관)	6
제9조(기술협력회의 운영)	6
제10조(보안의무)	7
제11조(제출물 및 산출물 관리)	7
제12조(날짜의 기산)	8
제2절 시험기관 및 시험원	9
제13조(시험 대상의 범주)	9
제14조(시험기관 승인요건)	9

제15조(시험기관 승인신청)	10
제16조(승인신청기관 심사 등)	10
제17조(시험기관 실태점검 등)	11
제18조(시험기관 역량평가)	12
제19조(시험기관 자격 정지)	13
제20조(시험기관 승인 취소)	14
제21조(시험원 자격 및 위촉)	15
제22조(교육과정 운영)	16
제23조(시험원 자격 정지)	16
제24조(시험원 자격 취소)	17
제3절 자문위원회	18
제25조(위원회 운영)	18
제26조(위원회 구성)	18
제2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9
제28조(위원회 개최)	19
제29조(심의 · 의결)	19
제30조(위원회 보안의무)	20
제31조(자문 · 심의비 지급)	20
제3장 보안기능 시험 절차	21

제1절 일반사항	21
제32조(시험원칙)	21
제33조(시험의 독립성 보장)	21
제34조(시험의 종류)	21
제35조(시험기준의 종류)	22
제2절 시험 절차	23
제36조(시험 신청)	23
제37조(시험 접수)	24
제38조(시험 계약)	25
제39조(시험수행계획서 작성)	26
제40조(시험착수 검토)	26
제41조(시험 수행)	26
제42조(보증시험 수행)	28
제43조(시험 중단 등)	29
제44조(시험 완료)	31
제45조(시험결과 검토)	31
제46조(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32
제47조(시험 및 발급현황 작성)	34
제4장 발급제품 관리	35

제48조(발급제품 등재)	35
제49조(확인서 재발급)	35
제50조(추가시험)	35
제51조(발급제품 조사)	36
제52조(확인서 효력 만료)	37
제53조(확인서 효력 정지)	37
제54조(확인서 효력 취소 등)	38
제5장 보안요구사항 관리	40
제55조(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40
제56조(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승인 및 공개)	40
제57조(일반 보안요구사항 작성)	40
부 칙	42
서식	43
[서식 제1호]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44
[서식 제2호]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47
[서식 제3호]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48
[서식 제4호] 시험원 보안서약서	49
[서식 제5호] 제출물 인계인수증	50
[서식 제6호] 시험기관 승인신청서	51

[서식 제7호] 시험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52
[서식 제8호] 시험기관 승인서	53
[서식 제9호] 시험원 위촉장	54
[서식 제10호] 시험원 이력카드	55
[서식 제11호] 자문위원 의견서	56
[서식 제12호] 자문위원 보안서약서	57
[서식 제13호] 보안영향분석서	58
[서식 제14호] 시험 접수증	59
[서식 제15호] 시험수행계획서	60
[서식 제16호] 시험 중단 통보서	62
[서식 제17호] 시험결과보고서	63
[서식 제18호] 시험결과 요약서	65
[서식 제19호] 보안기능 확인서	68
[서식 제20호]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69
[서식 제21호] 일반 보안요구사항 제안서	70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26. 1. 1. 국가정보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제품의 보안기능 시험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
 -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2. “시험”이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안전성이 시험기준에 부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기준”이란 정보통신제품이 보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보안기능의 종류와 구현 방식·강도 등을 서술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등의 문서를 말한다.
4.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정책기관이 정하는 정보통신제품의 안전성 검증기준을 말한다.
5. “정책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정책기관이 보안기능 시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시험기관”이란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책기관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
8. “시험원”이란 시험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검증기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신청기관”이란 정보통신제품의 개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제품의 보안기능 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보유기관”이란 발급제품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보안기능 확인서의 사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보안기능 확인서”란 시험기관이 보안기능을 시험한 결과 시험기준을 만족한다고 확인한 제품에 대해 검증기관 승인하에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2. “제출물”이란 신청기관이 보안기능 시험을 받기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정보통신제품 및 관련 문서 등을 말한다.
13. “신청제품”이란 신청기관이 시험 신청 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의 정보통신제품으로 소프트웨어, 펌웨어 등을 말한다.
14. “발급제품”이란 보안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15. “취약점”이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 정보를 열람 · 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정보통신 제품 · 운영환경의 결함을 말한다.
16. “일반 보안요구사항”이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제정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신청 · 시험기관 등이 작성한 보안요구사항을 말한다.
17.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ion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정책기관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8. “국내용 CC인증”이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IT보안인증사무국)의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인증 세부 수행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19.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공지한 암호모듈을 말한다.
 20. “자문위원회”란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비상설 기구를 말한다.
 21. “시험착수 검토 회의”란 신청제품의 보안기능 시험착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22. “시험 중단”이란 시험기관이 진행중인 시험 절차를 정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술책임자”란 시험기관에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고 시험 산출물 검토 등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시험수행 역량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험원을 말한다.
 24. “기술협력회의”란 보안기능 시험제도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거나 시험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정보원법」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정책기관, 검증기관, 시험기관, 신청기관, 보유기관,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는 보안기능 시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안기능 시험 체계

제1절 일반사항

제4조(정책기관) 국가정보원은 정책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기능 시험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검증기관 지정 및 감독
3. 시험기관 승인·정지·취소 및 시험기관 목록 공개
4. 자문위원회 운영
5.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승인·공개·해석
6. 일반 보안요구사항 승인
7. 보안기능 시험 대상 선정
8.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목록 및 효력 관리
9. 그 밖에 보안기능 시험과 관련한 정책 업무

제5조(검증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검증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기능 시험 관련 가이드·절차서 등의 수립 및 시행
2. 시험기관 승인·정지·취소 심사
3. 시험원 자격 위촉·정지·취소

4.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5. 일반 보안요구사항 검토 및 관리
6. 시험 결과 검증 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감독 및 실태점검
7. 보안기능 시험 착수·수행 현황 및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관리
8.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 만료·정지·취소 실무
9. 그 밖에 보안기능 시험과 관련한 검증 업무

제6조(시험기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기능 시험 관련 정책 및 가이드·절차서 등을 준수한 시험계약 체결, 시험의 수행, 시험결과 보증 및 현황 관리
2. 시험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성 확보
3. 일반 보안요구사항 제·개정 검토
4. 신청제품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 관련 자문 등
5. 발급제품 관리 관련 시험 지원
6. 그 밖에 보안기능 시험과 관련한 업무

제7조(신청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에 필요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의 각종 서류 및 제출물 제공
2. 시험에 필요한 환경 및 제반 시설 제공
3. 신청제품의 공급망 위험 확인에 필요한 제출물 제공

4.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시험기관, 검증기관 및 정책기관의 사용 보장
5. 신청제품의 개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제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법적권한 보유
6. 시험 신청을 위해 제출된 제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적책임 준수

제8조(보유기관) 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2. 발급제품의 보안성을 저하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3. 발급제품에서 취약점 발견 시 자체 없이 패치 개발 및 적용
 4. 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은 발급제품의 배포·설치방식 준수
 5. 발급제품 관리
- ② 보유기관은 발급제품에 대해 시험받은 내용 이외의 허위사실을 표기·광고하거나 발급제품의 형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여 발급제품으로 안내하는 등 시험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발급제품으로 표기·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술협력회의 운영) ① 검증기관은 정기 및 수시로 시험기관 대상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험기관은 검증기관이 기술협력회의 개최 시 기술책임자 등 관련 담당자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보안의무) ①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소속된 자는 재직 및 퇴직 이후에도 시험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기관 및 보유기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소속된 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기능 시험관련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시험기관은 시험원 보안서약서[서식 제4호]를 사용하고 검증기관은 이에 준하는 내부의 별도 서식을 사용한다.

③ 검증기관은 시험기관 승인 심사 및 시험기관 실태점검 등에서 시험기관 보안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점검한다.

제11조(제출물 및 산출물 관리) ① 시험기관은 신청기관과 제출물을 인계인수할 경우 제출물 인계인수증[서식 제5호]을 작성한다.

②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출물 및 산출물에 대해 비인가된 열람, 변조, 위조,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제출물

2. 시험 관련 산출물

③ 시험기관은 제출물을 신청기관 또는 보유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 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시험이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된 시험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체 폐기하거나 일부 제출물을 보관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급제품의 시험제출물 중 제출문서의 원본과 하드웨어 모델을 신청기관에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체 폐기하거나 일부 제출물을 보관할 수 있다.

- ⑥ 시험기관은 보관 중인 제출물의 확인서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모두 반환하거나 신청기관과 협의하에 자체 폐기하여야 한다.
- ⑦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제출물을 처리하고, 발급 제품의 하드웨어 모델을 제외한 제출물 사본 및 산출물은 발급제품 관리 등을 위해 확인서 만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⑧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정당한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2. 법원의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3. 신청기관,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자료제공을 동의할 경우

4. 시험 현황 통계자료 등 특정 신청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 ⑨ 정책기관과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제출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적절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발급제품의 취약점 보완 등 발급제품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시험결과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⑩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출물 및 산출물 보안관리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12조(날짜의 기산) ①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발급일로부터 1년 단위로 기산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은 공휴일(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업무 수행일만 포함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절 시험기관 및 시험원

제13조(시험 대상의 범주) ①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 장비, 양자암호통신 장비,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통신제품 유형에 따라 시험기관이 시험 수행 가능한 시험 대상의 범주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신청하고 보안기능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기관 승인요건) ① 시험기관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승인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국내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위치
2. 검증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시험원을 4명 이상 보유하고, 이 중 1명 이상을 기술책임자로 지정
3.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 유지
4.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장비 등 확보
5.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수립한 자체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구비
6.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유/무선 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시험 등 관련 분야의 인정서 보유
7.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는 기관
8. 기타 정책기관이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정책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시험기관 승인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기관 승인신청) ① 승인신청기관은 시험기관 승인신청서[서식 제6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1부[서식 제7호]
 2.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수립한 자체 품질매뉴얼 1부 및 이행 실적 1부
 3. 시험 관련 인력 및 조직 등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4.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신용평가정보 각 1부
 6. 시험 수행을 희망하는 시험 대상 범주별로 정보통신제품 10종에 대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자체 모의 시험한 시험결과보고서 각 1부
-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험기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책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검증기관은 시험기관 승인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정책기관에 전달하고 승인신청기관 심사 관련 세부사항을 정책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승인신청기관 심사 등) ① 검증기관은 승인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와 모의시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종합 검토한다.

1. 제14조에 규정된 시험기관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모의시험 결과
3. 현장 평가(자체 품질매뉴얼 준수 실태, 시험업무 수행역량 등)

- ② 검증기관은 승인신청기관 대상으로 제1항에 대해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이 정한 보완기간 이내에 승인신청기관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시험기관 승인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승인신청기관 심사 결과를 정책기관에 보고하고 정책기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이 별도의 심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정책기관에 보고하고 정책기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정책기관은 승인신청기관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승인할 경우 시험기관 승인서 [서식 제8호]를 승인신청기관 장에게 교부한다.
- ⑦ 정책기관은 승인된 시험기관 정보를 공개된 매체에 게시한다.

제17조(시험기관 실태점검 등) ①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보안기능 시험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시험업무 수행의 적절성
 2. 시험기관의 시험원 자격유지 실태
 3. 시험실 및 각종 시험업무용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4. 기타 시험기관 유지에 필요한 사항
- ② 검증기관이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험기관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20일 이내 검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은 각 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원 전보 및 입사·퇴사

2. 시험기관 조직 변경 및 인수·합병·명칭변경

3. 기타 시험기관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4. 외국인 투자 현황 변동사항

④ 시험기관은 이전·축소·확장 등 시험환경 및 보안관리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검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은 외부에 보안기능 시험 관련 허위 사실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시험기관 역량평가) ①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이 제6조에 따른 보안기능 시험 및 제10조에 따른 보안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시험기관은 검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수립한 자체 품질매뉴얼 1부 및 이행 실적 1부

2. 시험 관련 인력 및 조직 등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대상 범주별로 최신 120일내 시험결과보고서 각 1부

5. 기타 검증기관이 역량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자체 품질매뉴얼 준수 실태, 시험 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다.

- ④ 시험기관은 역량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인수·합병 등 중요사항 변경이나 지침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험기관 자격 정지) ① 정책기관은 시험기관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증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험기관이 제14조의 승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시험기관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3. 시험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시험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시험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시험실적이 없는 경우
6. 기타 시험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된 경우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경우 시험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제공받은 제출물을 신청기관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기관은 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자격이 정지된 시험기관은 정지기간이 20일을 초과할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시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시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 정지 종료일 이전에 자격 정지 사유에 대하여 보완하고 제1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시험기관 역량평가를 완료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0조(시험기관 승인 취소) ① 정책기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증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 산출물을 제출한 경우
 3. 시험기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도 검증기관 장의 승인 없이 그 기간 내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험기관이 제19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시험기관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시험기관 또는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해외로 이전(移轉)하거나 외국 소재 기관에 시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7. 신청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신청기관 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8. 시험기관이 파산하거나 시험기관의 장이 자격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시험기관 자격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0. 기타 검증기관의 장이 시험기관 자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시험기관은 시험기관 자격 취소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서 제공받은 제출물을 신청기관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고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험 관련 산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발급제품 조사를 위해 시험기관은 신청기관 및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발급제품의 제출물을 검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시험원 자격 및 위촉) ① 검증기관은 시험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원의 자격을 구분한다.

1. 수습시험원 : 시험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시험 업무를 보조하는 자

2. 시험원 : 보안기능 시험 수행이 가능한 자

② 시험기관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수습시험원 자격 심사를 검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정보통신제품의 개발·품질보증 시험 유관업무 3년 이상 수행한 자

③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습시험원의 시험원 이력카드[서식 제10호]를 제출하고 시험원 자격 심사를 검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수습시험원 위촉 후 시험 수행을 희망하는 시험 대상 범주별로 정보통신제품 시험에 2회 이상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시험 산출물을 작성한 자

2. 검증기관이 인정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국가용 보호프로파일 기반의 시험 수행에 2회 이상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시험 산출물을 작성한 자

3. 기타 수습시험원 중에서 보안기능 시험 수행이 가능하다고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이 인정한 자

④ 검증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경우 시험원 위촉장[서식 제9호]을 수여한다.

- ⑤ 검증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과 시험수행 역량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경우 시험원 위촉장[서식 제9호]을 수여한다.
- ⑥ 시험기관은 시험원이 시험수행 가능한 시험 대상 범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제1호를 준용하여 심사를 검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⑦ 검증기관은 제6항에 의하여 제출한 시험 산출물을 통해 시험수행 역량을 심사한 후 시험수행 가능한 시험 대상 범주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 ⑧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 시험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 내 보안기능 시험 1회 이상 수행
2. 최근 2년 내 제22조제1항에 의한 보수교육과정 1회 이상 참여

제22조(교육과정 운영)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거나 외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일반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횟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교육과정 : 정보통신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편성·운영
2. 보수교육과정 : 수습 이상의 시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편성·운영
3. 기타 교육과정

- ② 검증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은 교육계획 등을 사전에 검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에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원 자격 정지) ① 시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시험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시험원 자격 유지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시험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 ② 시험원은 휴직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제21조제8항의 시험원 자격 유지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검증기관에게 시험원 자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증 기관은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시험원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시험기관에서 자격 정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시험원을 시험에 보조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시험원이 제21조제8항을 만족하는 경우 시험에 보조로 참여하지 않아도 자격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원 자격 취소) ①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시험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 관련 산출물을 제출한 경우
3. 시험원 자격 정지 상태에서 검증기관의 별도 승인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험원 자격 정지 상태가 3년을 초과한 경우
5. 비밀엄수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검증기관이 시험원 자격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시험원은 협의된 기간동안 시험원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제3절 자문위원회

제25조(위원회 운영) 정책기관은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관련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안의 결정에 투명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 정지 · 취소에 대한 심의
2. 시험기관 자격 정지 · 취소에 대한 심의
3. 신청기관(보유기관) 및 시험기관 사이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정책기관의 장이 빌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책기관의 1인이 위원장이 된다.
 2. 자문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검증기관, 정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한다.
 3. 자문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간사는 검증기관의 1인이 수행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위촉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총괄 및 회의 주재

2. 위촉 위원 대상 위촉 및 해촉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안건 상정 및 위원회 회의 진행

2.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 결과 종합

제2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심의 · 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3조에 따른 확인서 효력 정지 또는 제54조에 따른 확인서 효력 취소에 대한 심의가 있는 때에는 보유기관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회의 참석을 통보한다.

③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문위원 의견서[서식 제11호]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 결과 부(否) 판정을 내린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부결 사유를 보완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제28조제2항의 의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30조(위원회 보안의무) ① 자문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책기관의 장은 보안기능 시험 업무와 관련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에게 자문위원 보안서약서[서식 제12호]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정책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심의비 지급) 정책기관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안기능 시험 절차

제1절 일반사항

제32조(시험원칙) 시험기관은 시험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반복성, 재생산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정성 : 신청제품과 신청기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반복성 : 시험된 신청제품을 동일한 시험원이 다시 시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4. 재생산성 : 시험된 신청제품을 다른 시험원이 다시 시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5. 적절성 : 신청제품의 시험결과가 해당 시험기준을 만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의 독립성 보장) 신청제품의 개발 또는 제출물 작성에 참여한 시험원은 해당 제품의 시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시험의 종류) ① 보안기능 시험은 시험 절차에 따라 기본시험, 보증시험, 수용시험, 동일성 확인 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시험은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③ 보증시험은 신청제품 또는 발급제품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기능 등에 대한 신청기관의 보증을 별도로 확인하는 시험이다.

④ 수용시험은 정책기관의 장이 인정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보호프로파일을 시험기준으로 하여 CC 인증서 등을 획득한 신청제품에 대해 제출물 확인 및 보안 기능 시험을 간소화하는 시험이다.

⑤ 동일성 확인 시험은 정책기관이 지정한 제품유형에 한하여 신청제품이 발급 제품과 동일한 형상과 보안기능을 제공하는지를 간략히 확인하는 시험이다.

⑥ 추가시험은 발급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1.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가 필수인 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 제품의 운용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 또는 운영체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제품의 하드웨어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외 정책기관·검증기관이 추가시험 신청을 허용할 경우

⑦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출문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35조(시험기준의 종류) ① 보안기능 시험의 시험기준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일반 보안요구사항, 보안기능 구현명세서로 구분한다.

② 정책기관은 시험기준에 대한 적용 및 준수 방법 등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2절 시험 절차

제36조(시험 신청) ① 신청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위해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서식 제1호],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서식 제2호],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물과 함께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본시험을 신청할 때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출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3. 자체 시험결과보고서
4. 취약점 개선 내역서
5.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

③ 신청기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른 수용시험을 신청할 때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출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절차서 및 사용자운영 설명서
2. 독립시험서
3. 침투시험서
4.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

④ 신청기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동일성 확인 시험을 신청할 때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출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

3. 시험결과보고서

⑤ 신청기관이 제34조제6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신청할 때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출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영향분석서[서식 제13호]

2. 제품 설명서

3. 자체 시험결과보고서

⑥ 신청기관은 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서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신청기관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제출물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청기관은 시험을 위해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원이 신청제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문서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신청기관은 시험 계약 전까지 시험기관의 장과 별도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제출물 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시험 접수) ① 시험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신청 받은 경우에 제출물 등을 검토한 후 시험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에 대해 시험기관의 인력, 기술력 또는 관련 시험 장비의 미비 등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제품의 개발·배포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UN·미국·EU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단체가 연루된 경우

4. 신청기관이 제54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효력이 취소된 발급제품을 개발·유통한 경우

- ② 시험기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 검토할 경우에는 가용 시험인력, 신청 제품의 유형, 시험에 소요되는 난이도 및 시험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시험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시험 접수 후 신청기관에게 시험 접수증 [서식 제14호]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접수와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시험 계약) ① 신청기관은 시험 접수증 발급 등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본적인 시험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받은 후 시험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험기관은 신청기관과 시험에 대한 제반 절차에 합의한 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시험기관은 시험계약에 필요한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시험기관은 시험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검증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시험기관은 신청기관과 시험계약 체결 시 시험 수행 및 보안기능 시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시험기관은 시험계약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개신할 수 있다.

제39조(시험수행계획서 작성) ① 시험기관은 시험착수를 위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출물 검토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수행계획서[서식 제15호]를 작성한다.

② 시험기관은 시험착수 검토 회의를 위해 검증기관에 제출문서와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시험반 구성 및 시험일정은 신청제품의 특성, 시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0조(시험착수 검토) ① 검증기관은 시험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착수의 적절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착수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책기관

2. 신청기관 또는 신청제품의 개발·유통과 관련된 기관

3. 관련 전문가

제41조(시험 수행) ① 시험기관은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 착수가 승인된 순서대로 시험에 착수한다.

② 시험기관은 시험에 필요한 제반 시설, 환경 등의 지원을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신청기관의 제출물이 시험수행계획서 내 명시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외부 IT 실체의 신청제품 접속을 위해 제공(구현)된 인터페이스

(접속을 위해 실행·준비되는 포트·서비스·프로세스 등)와 계정을 빠짐 없이 식별하여야 한다.

2. 기본 설정된 관리자 계정 및 유지보수용 계정을 빠짐 없이 식별하여야 한다.
3. 전원 인가 시 또는 인가 후 운용 중에 특정한 조건·신호·키보드 입력의 조합 등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터페이스·계정을 빠짐 없이 식별하여야 한다.
4. 제공(구현)되는 모든 인터페이스와 계정은 사용 목적을 만족하여야 하며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제공(구현)될 수 없다.
5. 검증기관 요청 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검증기관 요청 시 신청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를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3항에 대해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은 시험수행 도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제출한 시험수행계획서를 검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1. 시험원 교체, 시험반 구성, 시험일정 등 시험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2. 신청기관 명칭, 신청제품 명칭 등 제출문서 기재 내용의 변경
3. 보증시험 수행 등 시험 종류의 변경
4. 그 외 신청기관이 시험의 중단, 연기 등을 요청한 경우

⑥ 시험기관은 시험 과정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나 시험을 외부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관 및 검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⑦ 검증기관은 시험방법이나 시험원의 시험역량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시험에 참관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검증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⑧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은 식별된 취약점 혹은 보안 위해 요소 등에 대해 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시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보증시험 수행) ① 검증기관은 정책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제품 또는 발급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라도 보증시험의 수행을 시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품의 개발·배포·운용 과정에서 사이버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에 구현된 보안·비보안 기능의 신뢰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3. 제품의 위장 개발자 참여 등 개발과정에 대한 신청기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4. 신청기관이 신청제품을 자체 개발하지 않아 신청제품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시험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신청기관 또는 보유기관에 보증시험 대상임을 통보한다.

③ 보증시험 대상기관은 제5항에 규정된 제출물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행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④ 보증시험 대상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시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문서 중 정책기관·검증기관이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1호는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소스코드
2. 보안 아키텍처 설명서
3. 상세 설계서
4. 신청기관이 수행한 상세 시험결과서
5. 신청기관이 수행한 침투시험서

6. 형상관리 문서

7. 배포절차가 완전하게 설명된 배포절차서

8. 신청제품 개발에 사용된 도구에 대한 개발도구문서

9. 생명주기정의서

10. 신청제품을 하드웨어 모델에 탑재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11. 기타 신청제품의 개발·배포 과정 등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문서

⑥ 시험기관은 보증시험 대상기관의 제출물을 검토하고 제37조에 따른 시험 접수, 제38조에 따른 시험 계약, 제39조에 따른 시험수행계획서 작성을 수행해야 한다.

⑦ 검증기관은 신청제품과 제출된 문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신청기관이 참석하는 보증시험 검토 회의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검증기관은 시험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검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시험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증시험의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기관에 시험 수행이 가능함을 통보한다.

⑩ 시험기관은 제출물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행한 보안기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험결과보고서에 기술(記述)하여 검증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⑪ 검증기관은 정책기관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험기관에 별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정책기관은 보증시험에 적용되는 제출물 작성 및 보증시험 기준을 별도로 공지하거나 시험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시험 중단 등) ①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면 검증기관에

통보 후 시험을 중단할 수 있고 시험순서를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물 보완을 3회 이상 혹은 20일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등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시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6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 ②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이 신청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시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험 중단이 시험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예: 2개월 이상) 또는 횟수를 초과(3회 이상)한 경우
 3. 신청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험을 철회하거나 신청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해지인 경우
 4. 제출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여부 소송 1심 결과 신청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5. 신청기관이 정책기관, 검증기관, 시험기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제출물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6.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기관의 시험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발급 절차를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강요할 경우
 7. 제42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통보가 있을 경우
- ③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중단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시험 중단 통보서[서식 제16호]로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은 시험 중단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검증기관에 통보 후 중단된 항목부터 재개할 수 있다.

제44조(시험 완료) ① 시험기관은 시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제출한 제출 문서 사본 각 1부
 2. 신청기관이 작성한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등 신청 서식 사본 각 1부
 3. 시험기관이 작성한 신청제품의 해시값이 기재된 시험결과보고서[서식 제17호] 사본 1부
 4. 제품 유형별로 작성된 시험결과 요약서[서식 제18호] 사본 1부
- ② 시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에 제출하는 시험결과보고서와 시험결과 요약서는 시험기관의 장이 정한 기술책임자의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은 검증기관으로부터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시험결과 검토) ①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이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
2. 시험의 내용과 결과가 시험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3. 신청제품의 취약점 식별·개선여부·개선책임 주체에 대한 증빙·확인 여부
4. 신청제품 개발 주체에 대한 증빙 여부
5.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UN·미국·EU 등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다자간 제재 또는 일방적 제재 대상 우려의 해소 여부

6. 기타 검증기관이 요청한 사항

- ② 검증기관은 제1항의 시험결과 확인을 위해 시험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전체를 확인하거나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보증시험 결과에 대해 신청제품 및 신청기관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우려의 해소 여부 및 필요한 보증의 제공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에게 시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시험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검증기관은 시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결과 검토를 중단할 수 있다.
- ⑥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제4항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시험기관은 검증기관이 제45조에 따른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기능 확인서 [서식 제19호]를 신청기관에 발급한다.

- 1. 보안기능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제도명칭(영문약칭)-검증기관(영문약칭)-일련번호(발급연도+4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 2. 하나의 보안기능 확인서에 복수의 발급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 3. 확인서 재발급의 경우, 이미 부여된 발급번호를 그대로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판매에 필요한 요건·절차상에

흡결이 있거나, 위계로서 흡결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

2. 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3. 신청기관이 신청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발급되었다고 허위로 공표·홍보할 경우

③ 제34조제2항의 기본시험과 같은 조 제3항의 보증시험에 따라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발급제품의 보증시험 결과에 따라 신규로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최초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

④ 제34조제4항의 수용시험에 따라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부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가 필수인 제품에 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암호모듈검증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제34조제5항의 동일성 확인 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의 추가시험에 따라 신규로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최초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추가시험을 수행하여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급일 또는 수용한 인증서의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지체 없이 시험결과 요약서를 정책기관에 송부한다.

제47조(시험 및 발급현황 작성) ① 시험기관은 보안기능 시험의 차수·수행 및 보안 기능 확인서 발급 등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안기능 시험 수행 현황에 기재하여 검증기관에 통보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수행 현황을 취합하여 정책기관에 제출한다.

제4장 발급제품 관리

제48조(발급제품 등재) 정책기관은 제4조에 따라 발급제품에 대한 정보와 시험 결과 요약서를 공개된 매체에 목록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서 재발급) 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안이 발생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0호]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기능 확인서 권리를 양수한 경우
2. 보유기관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3. 보안기능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확인서의 소유권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거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유기관 명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 및 검증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발급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 재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기본시험, 보증시험, 수용시험, 동일성 확인 시험을 수행한 발급제품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시험을 수행한 발급제품의 추가시험은 제34조제6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보유기관은 제34조제6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은 제품의 취약점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제4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추가시험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 신청제품은 신청 사유와 무관한 형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형상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보안기능 확인서에 기재된 하드웨어 모델과 동일한 CPU 제조사(또는 아키텍처)인 경우

2. 보안기능 확인서에 기재된 하드웨어 모델에 공통으로 탑재된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NIC를 탑재한 경우

3. 기타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이 승인한 경우

⑥ 검증기관은 추가시험의 시험 범위 및 방법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51조(발급제품 조사) ① 정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 및 보유기관에 발급제품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발급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2. 발급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발급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4. 발급제품의 개발·배포·운용 과정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5. 보유기관에 공급망 위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발급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6. 발급제품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UN·미국·EU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단체와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 ② 보유기관은 제1항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기관과 함께 시험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유기관은 발급제품 취약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0조제3항에 따라 추가시험을 수행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된 제품으로 기본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보유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책기관 및 검증기관은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발급제품에 대한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확인서 효력 만료) ① 보안기능 확인서는 제46조에 따라 정해진 만료일에 효력이 만료된다.

② 제50조제3항에 따라 추가시험을 수행하여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정책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에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를 만료할 수 있다.

제53조(확인서 효력 정지) ① 정책기관은 발급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발급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공개된 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판매에 필요한 요건·절차상에 흠결이 있거나, 위계로서 흠결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

2. 발급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3. 보유기관이 제51조제1항에 의한 조사를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 제51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유기관에 발생한 공급망 위험과 관련된 사고가 발급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5. 제5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조사 결과 발급제품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UN·미국·EU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단체와 연루되었다고 정책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정책기관은 보유기관이 제8조제1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기관은 발급제품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을 우선 정지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확인서 효력이 정지된 보안기능 확인서는 그 사유가 없어질 경우 기존 확인서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

제54조(확인서 효력 취소 등) ① 정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개된 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1. 보유기관이 발급제품에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였거나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2. 개발·생산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발급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 보유기관이 제53조에 따라 확인서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정지 사유에 대해 소명하여 해소하지 못한 경우
 5. 제53조제4항에 따라 발급제품의 확인서 효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반복적으로 정지될 경우
- ② 정책기관은 보유기관이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발급제품을 각급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보유기관의 시험신청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안요구사항 관리

제55조(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① 정책기관은 정보통신제품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에 적합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을 검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정책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보안 기술 및 정책 등을 반영하여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관리한다.

④ 정책기관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제품 유형 단위 또는 기능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승인 및 공개) ① 정책기관은 제55조에 따라 개발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정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공개된 매체에 게시한다.

③ 정책기관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적용 방법, 적용 대상, 적용 시점에 대해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57조(일반 보안요구사항 작성) ① 신청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일반 보안요구사항 제안서[서식 제21호]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의 보안기능이 현행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3. 향후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위해 사전에 작성하고자 할 경우

② 일반 보안요구사항은 제품 유형 단위 또는 기능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작성자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구조 및 기술(記述) 방법 등을 참조하여 일반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제안된 일반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기능 식별, 기술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증기관과 협의하거나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일반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검토가 완료된 후, 검증기관을 통해 정책기관에 승인을 요청한다.

⑥ 정책기관은 검증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안된 일반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반 보안요구사항의 개정 승인 여부는 검증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검증기관은 정책기관이 승인한 일반 보안요구사항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⑧ 일반 보안요구사항은 승인된 날부터 신청제품의 보안기능 시험에 시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정책기관은 일반 보안요구사항의 적용 방법에 대해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부 칙

<국가정보원 지침 2026.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의 제출) 보안기능 시험 신청에 필요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출한다.

서식

【 서식 제1호 】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앞 면)

접수번호 제 호				
신청기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 소			
	⑤ 담 당 자	성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험종류	<input type="checkbox"/> 기본시험 <input type="checkbox"/> 보증시험 <input type="checkbox"/> 수용시험 <input type="checkbox"/> 동일성 확인시험 <input type="checkbox"/> 추가시험 * 추가시험 시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input type="checkbox"/> 검증필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 연장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운영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 운영체제 추가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하드웨어 모델 추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책기관·검증기관이 추가시험 신청을 허용			
	⑥			
	제 품 명			
	제 품 군			
	제 품 유형			
시험기준	<input type="checkbox"/>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 보안요구사항 <input type="checkbox"/>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시험기준명	
	⑩			
	제출형태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펌웨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물리적 범위(예: 파일명 및 확장자)
⑪				
해시값				
개발기관	상 호	개발국가	개발기관과의 관계 서류	
판매형태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하드웨어 모델에 탑재 <input type="checkbox"/> 기타			
⑭				
하드웨어 모델 생산기관	상 호	생산국가	생산기관과의 관계 서류	
검증필 암호모듈				
수용증서				
동일성 제품				
<p>「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p> <p><시험기관장> 귀하</p>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작성요령

(뒷 면)

1. 해당하는 빙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기관의 상호를 기재한다.

②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신청기관은 시험기관에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한다.

③ 신청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④ 신청기관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

⑤ 신청기관의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⑥ 신청하는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표기한다. 추가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한다.

⑦ 신청제품 명칭을 기재한다.

⑧ 신청제품이 속한 제품군을 기재한다.

⑨ 신청제품이 유형을 기재한다.

⑩ 신청제품의 시험기준을 선택하여 표기하고 시험기준 명칭을 기재한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보안기능 구현명세서는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보안 요구사항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

⑪ 신청제품의 제출형태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 신청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모두 기재한다.

⑫ 신청제품의 해시값을 기재한다. 해시값 생성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시값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⑬ 신청제품을 개발한 기관의 상호와 국적을 기재한다. 신청제품 개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한 경우 모두 기재한다. 신청제품 개발에 신청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계약서)를 개발기관과의 관계 서류로 기재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한다. 개발기관 입력란이 부족한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⑭ 신청제품의 판매형태를 모두 표기한다. 신청제품을 하드웨어 모델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하드웨어 모델 목록을 첨부한다.
- ⑮ 신청제품이 하드웨어 모델에 탑재되는 경우 하드웨어 모델을 생산한 기관의 상호와 국적을 기재한다. 신청제품의 하드웨어 모델 생산에 여러 기관이 참여한 경우 모두 기재한다. 신청제품의 하드웨어 모델 생산에 신청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계약서)를 생산기관과의 관계 서류로 기재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한다. 생산기관 입력란이 부족한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⑯ 신청제품이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가 필수인 제품인 경우 검증번호, 암호모듈명, 만료일을 기재하고 암호모듈 검증서가 존재하는 경우 사본 1부를 첨부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⑰ 신청하는 시험의 종류가 수용시험인 경우 증서번호, 만료일, 발급기관을 기재하고 증서(예: CC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⑱ 신청하는 시험의 종류가 동일성 확인 시험인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번호, 만료일을 기재하고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한다.

【 서식 제2호 】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은/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과 윤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를 확인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수합니다.
-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제43조(시험 중단 등), 제51조(발급제품 조사), 제53조(확인서 효력 정지), 제54조(확인서 효력 취소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을 준수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발급 신청 제품은 아래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합니다.

1	비밀번호 및 암호화 키가 은닉되거나 하드코딩 되어있지 않음.
2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음.
3	제품 설명서에 기술된 방법 이외 대상 제품의 보안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발급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보안기능 확인서 및 시험결과 요약서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발급 이후 식별되는 취약점은 정책·검증기관과 합의한 기일내에 보완하고 정책 기관이 요청할 경우, 발급제품의 국가·공공기관 납품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시험기관장> 귀하

【 서식 제3호 】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한 제품의 펌웨어(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아래 취약점 공개 사이트에 게시된 취약점을 모두 개선하였으며 개선 내역은 첨부로 제출합니다.
- 제품명 / 버전 :
- 취약점 공개 사이트

1	CVE(https://cve.mitre.org)
2	개발사(또는 제조사) 홈페이지
3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rcert.or.kr)

첨부 : 취약점 개선 내역서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시험기관장> 귀하

【 서식 제4호 】

시험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보안기능 시험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과 윤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보안기능 시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정책기관, 검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위상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약자	직급(위)	성명	(인)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명	(인)
소속			

【 서식 제5호 】

제출물 인계인수증

신청제품명 :

상기 제출물을 인계 및 인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속속

- 설명

(91)

인계자

- 수속

- 설명

(91)

【 서식 제6호 】

시험기관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신청기관	법인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p>「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시험기관 승인을 신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본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검증기관의 승인심사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대표		(법인인감)		
IT보안인증사무국장 귀하				

【 서식 제7호 】

시험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법인 _____(이하 "법인"이라 한다)은/는 시험기관 승인 신청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시험기관으로 승인받은 이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인은 보안기능 시험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법인은 시험 수행에 있어 시험기준을 적용하고 검증기관의 관리 · 감독을 성실히 수용하겠습니다.
- 법인은 시험 신청기관의 저작권 사항 등 시험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투자자,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법인은 시험 신청기관 등이 시험업무의 결함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IT보안인증사무국장 귀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인감)

상기 법인의 대표자 _____은/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인감)

대표자 주소

시험기관 승인서

보안기능 시험기관 승인서

기 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시험업무 범위

상기 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제도 운영 지침』 제14조에 의거,
보안기능 시험기관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합니다.

2025. 3. 6.



국가정보원장

【 서식 제9호 】

시험원 위촉장

제 호

보안기능 시험원 위촉장

• 성명 :

• 소속 :

• 자격 :

• 시험업무 범위 :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제21조에 의거,
위 사람에게 시험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IT보안인증사무국장



【 서식 제10호 】

시험원 이력카드

(사진)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이 름	
	학 력	최 종 학 력	전 공	
	시험원 자 격	취득일자(수습)	취득일자(시험원)	
근무경력	기 관 명	근무부서/분야	기 간	비 고
교육훈련 (보수교육 등)	교 육 명	기 간	교육기관	비 고
보안기능 시험 이력				
제 품 명	시험종류 (기본/보증)	제품군	시험기간	시험기준

【 서식 제11호 】

자문위원 의견서

안건 번호	제 - 호
안건명	
안건 상정일	
상정 기관	
일자	
자문 의견	
위원	(인)

【 서식 제12호 】

자문위원 보안서 약서

본인은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제_____차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집행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보안영향분석서

1. 발급제품 개요

- 가. 작성자 정보 (보유기관, 작성일, 작성자 등)
- 나. 발급제품 (제품명, 버전, 발급번호, 해시값, 발급일 등)
- 다. 이전 『추가시험』에 관련된 내용 (제품명, 버전, 발급번호, 발급일, 추가시험 내용, 해시값 등 전체 이력)

2. 변경 내역

- 가. 변경이 제출물에 미치는 영향(추가시험 사유에 적합한지 확인)
- 나. 변경 사유 및 세부 변경 내용(변경 후 제품의 세부 버전 포함)
- 다. 변경된 파일 및 설명 (발급제품의 설치 후 생성된 전체 파일 대비 변경된 파일 및 내용 설명)
- 라. 개발기관의 공급망 위험 관련 변경 여부(발급제품 개발시의 개발자 현황 대비 변경된 개발자 현황)
- 마. 테스트 정보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 바. 생산기관의 공급망 위험 관련 변경 여부(하드웨어 모델 추가 등에 따른 기존 하드웨어 모델 대비 주요 칩의 변경 여부)
- 사. 변경된 제출물 범위 및 내용 서술

【 서식 제14호 】

시험 접수증

(* 표기는 해당시 작성)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인				
신청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제품	시험종류	<input type="checkbox"/> 기본시험 <input type="checkbox"/> 보증시험 <input type="checkbox"/> 수용시험 <input type="checkbox"/> 동일성 확인시험 <input type="checkbox"/> 추가시험 * 추가시험시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input type="checkbox"/>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 연장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운영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 운영체제 추가 <input type="checkbox"/> 제품의 하드웨어 모델 추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책기관·검증기관이 추가시험 신청을 허용		
		제품명		
		시험기준	<input type="checkbox"/>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 보안요구사항 <input type="checkbox"/>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시험기준명	
		제출형태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펌웨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물리적 범위(예: 파일명 및 확장자)
	판매형태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하드웨어 모델에 탑재 <input type="checkbox"/> 기타		
	검증필 암호모듈*			
수용증서*				
동일성 제품*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

(직인)

<신청기관장> 귀하

【 서식 제15호 】

〈접수번호〉

시험수행계획서

〈신청제품〉

년 월 일

〈시험기관명〉

1. 개요

- o 신청기관
 - 신청기관명
 - 신청일자 및 접수일자
- o 신청제품
 - 시험종류
 - 제품명
 - 제품군, 제품유형, 시험기준
 - 제출형태, 해시값
 - 개발기관, 개발국가, 개발기관과의 관계 서류
 - 판매형태, 하드웨어 모델명
 - 생산기관, 생산국가, 생산기관과의 관계 서류
 - 검증필 암호모듈
 - 수용증서
 - 동일성 제품

2. 제출물 검토

- o 제출물 목록
- o 제출물 검토 결과
 -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사전검토 결과
 - 취약점 개선 내역서 사전검토 결과
 - 다자간 제재 또는 일방적 제재 대상 검토 결과

3. 시험 일정

- o 시험반 구성 : 시험반원, 보안기능 시험 수행 이력
- o 시험 세부일정 : 수행항목, 내용, 소요일수
- o 기타 사항

【 서식 제16호 】

시험 중단 통보서

1. 시험신청 내역

- 접수 번호 :
- 신청제품명 :
- 시험 종류 :
- 시험 기준 :

2. 시험 중단 사유

- 중단일시 :
- 중단사유
(부족시 별지 사용)

3. 시험 계약 해지 사유

- 해지사유
(부족시 별지 사용)

4. 요청사항

(부족시 별지 사용)

발행인

년 월 일 시험기관

(직인)

<신청기관장> 귀하

【 서식 제17호 】

〈접수번호〉

시험결과보고서

〈신청제품〉

년 월 일

〈시험기관명〉

1. 개요

- o 신청기관

- 신청기관명
 - 신청일자 및 접수일자

- o 신청제품

- 시험종류
 - 제품명
 - 제품군, 제품유형, 시험기준
 - 제출형태, 해시값
 - 개발기관, 개발국가, 개발기관과의 관계 서류
 - 판매형태, 하드웨어 모델명
 - 생산기관, 생산국가, 생산기관과의 관계 서류
 - 검증필 암호모듈
 - 수용증서
 - 동일성 제품

- o 시험기관

-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시험원

2. 시험결과 요약

- o 종합 시험결과, 항목별 시험결과

- o 시험환경, 하드웨어 모델의 주요 정보

3. 상세 시험결과

- o 제출물 검토 결과 : 보안기능 시험 신청, 취약점 개선 내역, 다자간 제재 또는 일방적 제재 대상 등 검토 결과

- o 시험기준에 따른 상세 시험내용

- o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서식 제18호 】

시험결과 요약서

이 문서는 *YYYY년 MM월 DD일*에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VSFT-0000-0000)의 부속문서로 △발급제품의 정보 △시험의 내용·결과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및/또는 일반 보안요구사항/구현명세서 기반 시험기준 사용 여부)를 도입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본 시험은 *既*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VSFT-000-00000000) '발급제품명'의 시험 결과를 수용하고 추가시험/동일성 확인 시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발급제품 식별정보]

제품군	
제품유형	
제품명	
시험기준	
시험결과보고서	
제품설명서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신청기관	
제조사	
개발방식	
생산방식	
시험기관	
만료일	

상기와 같이 보안기능 시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시험기관 명칭>

□ 식별정보

발급제품의 상세 버전, 구성요소, 유형 및 배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식별정보(물리적 범위)	유형	배포 방법
제품			
세부버전			
구성 요소	구성요소 A		
	구성요소 A		
	제품 설명서		

□ 해시값

발급제품의 해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소	해시값(SHA 512)
구성요소 A 식별정보 (물리적 범위)	
구성요소 A 식별정보 (물리적 범위)	
제품 설명서 식별정보 (물리적 범위)	

□ 운용 환경

발급제품의 운용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웨어 모델
- 구성요소 운용 환경
- 관리자 PC 운용 환경

□ 시험기준

발급제품이 준수한 시험기준과 제공하는 보안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류	기능명세 항목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발급제품은 ‘필수’ 기능명세를 모두 만족합니다.

다만, 제품의 구현 형태 등의 이유로 상기 기능명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고

발급제품 및 시험기준과 관련된 참고사항입니다.

- 검증필 암호모듈

구성요소	암호모듈명	세부정보	
		검증번호	
		개발사	
		모듈형태	
		검증일	
		효력만료일	
		보안수준	

보안기능 확인서

보안기능 확인서

VSFT Certificate



• 제품명 •

VSFT-ITSCC-20250001



신청기관 :
Sponsor

시험기관 :
Testing Laboratory

제품유형 :
Product Type

발급일 :
Date Issued

만료일 :
Expiry Date

상기 제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와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보안기능이 시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시험을 수행한 운영환경에서 시험된 제품 버전에만 적용되며 IT보안인증사무국 및 시험기관이 상기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The product identified in this certificate has been te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Regulations on Cybersecurity Services and the Guidelines for Validation scheme for Security Functions and Technologies. This certificate applies only to the specific version and release of the product in its tested configuration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This certificate is not an endorsement and no warranty of the product by the ITSCC or the testing laboratory.

IT보안인증사무국
장관명인



【 서식 제20호 】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기관	상 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재발급 사유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발생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보안기능 확인서 권리를 양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관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안기능 확인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발급제품	발급번호			
	제품명			
	제품유형			
	확인서 발급일			
	확인서 만료일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안기능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시험기관장> 귀하				

【 서식 제21호 】

일반 보안요구사항 제안서

신청기관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품명		
제품군		
제품유형		
신규여부		
세부내용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용지에 기재하여 첨부		